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4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신정훈·박해철·김종민

김문수 · 조계원 · 김재원

문대림 · 차지호 · 강득구

이상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하는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청취는 재량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우선 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억제용 말뚝과 같이 일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자동차뿐만 아 니라 장애인용 휠체어 등도 통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설물의 설치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적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 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생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2		
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u>들을 수</u>	<u>들어야</u>		
<u>있다</u> .	<u>한다</u>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	③		
선구역의 위치·면적, <u>그 밖에</u>	<u>시설물의</u>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설치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이 포함되어야 한다.	<u>으로 정하는 사항</u>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